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85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안 제41조제1항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중오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8. 26.

다. 회 부 일 : 2024. 8.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딥웹과 다크웹 등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증거의 확보 및 범인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의 예방 및 사전 차단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를 보다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청소년대상 범죄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에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감시

를 포함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에게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정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제4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3항제3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안 제41조제1항 등)

가. 개정안 요지

- ‘청소년유해정보’의 예시로 “청소년 대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추가함(안 제41조 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 및 감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1조 제1항 제4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¹⁾가 다음의 청소년 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제3항).
 -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제1호)
 -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제2호)
 -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제3호)
 -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4호)
 -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
- 안 제42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 제3항 제3호의2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u>음란·폭력정보</u>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 <u>청소년유해정보</u> ”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 ----- ----- <u>음란·폭력정보 및 청소년 대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u> ----- ----- ----- ----- -----.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u>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 및 감시</u>
②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u>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u>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다음 각 호의----- -----.
	1. <u>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④ (생략)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 설></u> 4. ~ 25. (생략) ④ (생략)	<u>소년보호계획의 수립</u> <u>2.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u> <u>3.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고충처리</u> <u>4.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u> <u>5.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4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u> 4.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유해한 인터넷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서의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²⁾,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청소년 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³⁾.
-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유통,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감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에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청소년 대상 범죄’의 의미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성범죄 등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면서 청소년이 특히 취약한 범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그러나 어떠한 범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범죄의 착수 시점에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범죄의 발생 이전에 ‘청소년 대상 범죄’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어떠한 범죄라도 피해자가 청소년이기만 하다면 개정안에 따른 청소년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대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41조 제1항의 ‘음란·폭력정보 등’은 청소년유해정보의 예시로, 음란·폭력정보 외에도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모두 청소년유해정보에 포함됨.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수립하는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서 기업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치 지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청소년 대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이미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청소년 대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청소년유해정보의 예시로 추가하는 개정의 실익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고충처리’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재도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현행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관리 및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2024년 9월 현재 236개 사이트·앱과 관련하여 177개 사업자

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6조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에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추가하고 있음⁴⁾.
-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청소년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로 볼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플랫폼 기업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보호의 책임을 묻는 추세임.
- 다만 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넘어서 유해정보에 따른 피해구제까지 사업자의 책무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듯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교육 등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개정안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인력 충원 등 사업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3.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넷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과태료 등 벌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 안 제76조 제3항 제3호의2는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문언만으로는 청소년 보호업무를 어느 정도로 게을리 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함.
- 처벌 대상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타 입법례 중에서도 어떠한 의무를 게을리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예는 드물다는 점과 처벌 대상을 명확화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을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1조 제1항의 ‘음란·폭력 정보 등’은 청소년유해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서 청소년 대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청소년유해정보의 예시로 추가하는 것은 개정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② 안 제42조의3 제3항 각 호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6조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서⁵⁾,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임무에 관한

개별적·구체적인 사항은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입법구조가 타당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③ 다만 안 제76조제3항제3호의2의 과태료 신설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용하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① ‘청소년 대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의 범위나 정의가 불분명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용자의 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②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교육 등의 책임을 개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③ 국내 사업자들은 이미 일부 해외 사업자와 달리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해외 사업자의 책무 이행 확보 없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것은 역차별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해외 서비스로의 이용자 이탈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감시’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정보통신망을 잠재적 범죄 공간으로 인식함에 따른 청소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기본권 침해

5)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3.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지가 있으며,

청소년 보호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